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14
----------	-------

발의연월일 : 2025. 11. 11.

발 의 자 : 윤재옥 · 엄태영 · 서천호
백종헌 · 이주영 · 한기호
이인선 · 박정하 · 김태호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며 기관 자체 수입을 제외한 예산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임.

그런데 현행법은 재원 조달 방식을 출연금이나 수입금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나 사업수입 예측 오차, 사업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경우 차입금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실정임.

반면, 국토부 산하의 다른 수지차 보전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차입금을 통한 재원 마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항공안전기술원 역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 시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지속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를 “재원으로 조달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u>출연금과 수입금</u> 으로 조달한다.	제12조(재원) ----- ----- ----- <u>재원으로 조달한다.</u>
1.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u>
2. · 3. (생 략) <u><신 설></u>	2. · 3.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u>